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4.7.29>

손해배상책임보증 [ ] 설정 [ ] 변경 신고서

※ 해당하는 곳 [ ]란에 v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일	접수번호	처리기간 즉시

개업 공인중개사	종별	[ ] 법인 [ ] 공인중개사 [ ]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(체류지)		
	전화번호		
중개사무소	명칭		등록번호
	소재지		
	전화번호		
보증	[ ]보증보험 [ ]공제 [ ]공탁	보증기관	설정일
		보장금액	보장기간
변경 전 보증내용			
변경 사유			

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보증보험증서 사본,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	수수료 없음

변경 신고 시 작성방법

1. "보증"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습니다.
2. "변경 전 보증내용"란에는 변경 전의 보증내용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완료
신청인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		시·군·구 (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